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8. 12 선고 2014가단750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전 문

원 고 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피 고 1. J

2. K
3. L

변론 종결 2015. 7. 8.

판결 선고 2015. 8. 12.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J는 M(N생)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17/19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1986. 4. 17. 접수 제73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들에게,

가. 피고 J는 별지 목록 순번 2, 3 기재 각 부동산 중 17/19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2. 23. 접수 제3681호로 마친,

나. 피고 K은 별지 목록 순번 4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2. 22. 접수 제3590호로 마친,

다. 피고 L은 별지 목록 순번 7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8. 24. 접수 제1776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1부동산'이라 한다)은 M의 소유였는데, 위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1986. 4. 17. 접수 제7399호로 1986. 4.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분할 전 여수시 O 전 5,275㎡(이하 '분할 전 O 토지'라 한다)는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06. 2. 23. 접수 제3681호로 2006. 2.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분할 전 O 토지는

2008. 12. 19. 별지 목록 순번 2, ③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필되었다(이하 '2, 3부동산'이라 한다). 다.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이하 '4부동산'이라 한다) 및 분할 전 여수시 P임야 3,929㎡(이하 '분할 전 P 토지'라 한다)는 망인의 소유였는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06. 2. 22. 접수 제3590호로 2006. 2.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K(피고 J의 아들이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위 분할 전 P 토지는 2006. 3. 28. 별지 목록 순번 5, 6, ⑦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필되었다(이하 '5, 6, 7부동산'이라 한다). 라. 피고 K은 2006. 8. 24. 피고 L에게 7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7769호로 2006. 8.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소재지 이후인 2015. 4. 30.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처인 원고 B이 3/19 지분, 자녀들인 피고 J와 원고 C, D, E, F, G, H, I가 각 2/19 지분의 비율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망인에 대한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망인은 2013년경 노인성 치매가 발병하여 치료를 받아왔으므로 소송무능력 상태에서 진정한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소송대리인 또한 망인의 적법한 위임 없이 선임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망인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비추어 을 5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27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1부동산에 관한 부분

원고들은, 망인이 1981년경 M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후 미등기 상태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J가 1986. 4. 17.경 망인의 승낙 없이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에 해당하여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 자는 제3자에 대해서 뿐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 야 하는데(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다18542 판결 등 참조), 을 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증인 M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2 내지 7부동산에 관한 부분

원고들은, 피고 J, K은 망인의 승낙 없이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등을 위조하거나 망인의 인감증명서를 무단으로 발급받아 피고 J의 경우 분할 전 O토지에 관하여, 피고 K의 경우 4부동산 및 분할 전 P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2, 3부동산에 관한 피고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4 내지 7부동산에 관한 피고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에 해당하여 말소되어야하고, 7부동산에 관한 피고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인 피고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이므로 원인무효에 해당하여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2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공증인 권혁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갑 10호증의 기재 및 망인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2 내지 7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J 또는 K 명의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유로 원인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준철

부 동 산 목 록

1. 여수시 Q 답 2,555m²
2. O 대 361m²
3. R 전 4,914m²
4. S 임 7,811m²
5. P 임 2,804m²
6. T 임 272m²
7. U 임 853m² 끝.

